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69
----------	-------

발의연월일 : 2026. 2. 4.

발 의 자 : 임미애 · 이연희 · 이수진
박지원 · 이춘석 · 임호선
오세희 · 윤종오 · 윤준병
전종덕 · 이원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지자체 및 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육성계획 수립 과정에 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현장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육성계획 이행 점검 및 국회 보고 체계를 통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

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연합회가 정책 협력 및 현장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범위에 민간단체 연합회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개정).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정책 수립 과정의 참여성과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7조제1항 개정).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수립에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방안을 신설(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마.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식품 관련 주요사항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친환경농어업인 등 관계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우선구매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추가함(안 제55조제2항제5호 신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
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에 필
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와 시도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중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민간단체 및 민간단
체 연합회(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를
“제18조의2의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조의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방안

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식품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민간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포함)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육성계획 점검(정성·정량) 결과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포함)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4. 친환경농어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5.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
6. 인증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친환경농어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및 점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 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신설></u>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와 시도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u>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 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 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u>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u> 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 ----- ----- ----- ----- --- <u>민간단체 및 민간단체 연합회(이하 “민간단체”라 한다)</u> ----- -----

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
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
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
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
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
술개발·경영지도 등을 함으
로써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
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
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
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
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
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신설>

-----.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

-----제18조의2의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5조의 민간단체 육성 및

10. · 11.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지원 방안

11. · 12. (현행 제10호 및 제11호
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

회)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식품에 관한 주요사
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친환경
농식품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
식품부차관과 민간 대표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무
농약 원료 가공식품 포함) 육
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육성계획 점검(정성·정량) 결

	<u>과 보고서에 관한 사항</u> <u>3.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무 농약 원료 가공식품 포함)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u> <u>4. 친환경농어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u> <u>5.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u> <u>6. 인증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 항</u> <u>7. 기타 친환경농어업과 관련하 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 항</u> <u>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 획의 수립·변경 및 점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u> <u>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u>
제55조(우선구매) ① (생 략)	제55조(우선구매)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 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② ----- ----- ----- ----- -----

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③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

③ (현행과 같음)